2023 - 5호(5. 30.)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재정 정보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의 입법·재정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 라 북 도 의 회 사 무 처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차 례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1.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2.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 6

Ⅱ. 법령 해석 사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 11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등 관련) ····· 14

Ⅲ.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주민쉼터의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있는바,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의 예산 편성 관련 질의(「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 19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등 관련) ····· 22

차 례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1. 독일의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 ····· 31

Ⅴ.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1. 「재외동포기본법」 ····· 41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2

□ 환경복지위원회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
2. 「지역돌봄보장법안」 입법예고 ····· 44

□ 농산업경제위원회

1. 「동물보호법」 ····· 48
2.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51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2
2.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 52

□ 교육위원회

1.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54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54

차 례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1. 팹리스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적 대안(중소벤처기업연구원) ····· 61
2. 부동산 경기 반등, 실수요 요건 충족이 중요하다.(현대경제연구원) ····· 64
3. 전기요금 상승압력과 중소기업의 영향(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 70
4. 디지털 권리 역량 강화 방안(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73
5.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국회미래연구원) ····· 76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외국인 유학생 도내 첫 한국형 취업 준비 교육 실시(강원도) ····· 83
2. 전국 최초 소상공인 상생 금융 모델 구축(전라남도) ····· 85
3. 자살 사후 대응 전문가 양성한다(충청남도) ····· 87
4. 경기도 소방, 전국 최초「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제작 (경기도) ····· 89
5. 원어민 선생님과 메타버스로 영어 공부해요(경북교육청) ····· 90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국토교통위) ····· 95
2.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성과 강화 필요 (교육위) ····· 99
3. 사회적약자자립지원 로봇기술개발 사업의 점진적 추진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103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손실 보전 관련 ····· 109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안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64

발의연월일 : 2023. 4. 28.
발 의 자 : 김정희, 서동욱, 김태균, 전경선, 차영수, 신민호, 최선국, 이 철, 이동현, 조옥현, 박종원, 강정일, 정 철, 강문성, 전서현, 신승철, 주종섭, 임형석, 박원종, 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최미숙, 김회식, 김재철, 김미경, 김호진, 이재태, 이광일, 최병용, 나광국, 최정훈, 류기준, 임지락, 김문수, 최명수, 이현창, 박문옥, 김인정, 김정이, 손남일, 김주웅, 박선준, 한춘옥, 정길수, 이규현, 최동익, 모정환, 진호건, 김진남, 송형곤, 박성재, 최무경, 박현숙, 장은영, 박형대, 박경미 의원(57명)

1. 제안이유

○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위기가구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도록 정함(안 제4조)

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장 및 대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라. 도지사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간담회 및 교육, 치유 프로그램, 우수성과 공유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전라남도 조례 제 호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및 읍·면·동 단위로 구성한 복지안전망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시·군 및 읍·면·동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둔다.

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2.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지원
3. 위기가구의 발굴 및 실태조사
4. 사회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운영) 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군 및 읍·면·동 여건에 따라 그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시·군의 대장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읍·면·동의 대장은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③ 시 · 군의 대원은 읍 · 면 · 동의 대장 중에서 시장 ·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시 · 군 여건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읍 · 면 · 동의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 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전기 · 가스 · 주택 설비 종사자
3. 우편집배원
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가구)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5.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간담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치유 프로그램
4. 우수성과 공유대회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원활한 운영과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 · 군, 공공기관,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으로 본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54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박정식.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신순옥, 윤희신. 박정수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의원(12인)

1. 제안이유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4조)

○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시책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나. 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안 제5조)

○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도록 규정함

다. 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안 제6조)

○ 각급학교에 대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규정함

라. 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안 제7조)

○ 가감차선 및 안전승하차 구역 등 학교 주변 보도 확보 등을 규정함

마. 지원(안 제8조)

○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원형 교차로를 말한다.
3.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각급학교 시설에 인접한 도로에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출입문과 각급학교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 교육감은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다음 각 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1.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

2.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보도 등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법령 해석 사례

Ⅱ 법령 해석 사례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23-0138, 2023. 5. 11., 소방청]

1. 질의요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각주: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등을 말하며(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이하 같음.)의 관계인(각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각주: 화재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말함.)(이하 “안전진단”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이하 “소방훈련·교육”이라 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을 의미하는지?

2. 회답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3. 이유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가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 해”를 뜻(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란 문언상 연도 앞의 말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그 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원·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23-28호) 제4조제1항에서는 소방본부장은 “다음 연도” 안전진단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방본부장 등은 매년 12월 10일까지 관계인에게 “다음 연도” 안전진단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고·통보의 기한에 비추어 보면 안전진단이 실시될 “다음 연도”란 ‘소방본부장 등의 보고·통보가 있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관계인은 그 “다음 연도”에 속하는 어떤 날에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게 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역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화재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서 최초 및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시기를 ‘특정한 날이 속하는 해’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역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로 해석하는 것이 화재예방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22-0784, 2023. 4. 21.]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제2호)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상 지구단위구역 안에 주차장 용도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없이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각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이 아닌 자주식에 해당하고, 주차대수가 400대 이하로서 사용기한은 특정되지 않으며, 가설건축물 외에 별도 건축물 및 공작물이 없는 노외주차장을 말하고(「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이하 같음.)(이하 “노외주차장”이라 함)을 같은 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도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과 제54조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없이 노외주차장을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도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과 제54조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1-2-1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훈령 1-2-3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훈령 1-2-4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적정한 이용을 동시에 실현시키기 위한 법정계획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제1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제2호)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제4호)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규정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6조제3항에서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본문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2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도 건축제한과 동일한 용도 및 종류 등의 제한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각주: 법제처 2011. 4. 21. 회신 11-0119 해석례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 및 종류도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는 주차장을 기반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결국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이 아닌 기반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52조제1항과 제54조 본문에 따라 주차장 용도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에서는 주차장 용도의 ‘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도 같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그 지정목적과 부합하는 건축물 등이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지구단위 구역 안의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차량의 해당 토지 진출입 시 소음·매연·교통혼잡 등에 비추어 주차장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물·공작물의 건축·설치가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의 경우 토지 자체의 이용일 뿐이어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과 제54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토지의 이용은 그 지상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토지에 위치하는 건축물·공작물의 용도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토지도 그와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각주: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례 참조)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없이 노외주차장을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도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과 제54조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Ⅲ.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Ⅲ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주민쉼터의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있는바,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으로만 편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023년 본예산 외에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도 되는지(「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법제처, 의견22-0389, 2023. 4. 19.]

【질의요지】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주민쉼터의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있는바,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으로만 편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023년 본예산 외에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도 되는지?

【의견】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주민쉼터의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있는바,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 외에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

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1. 12. 13. 회신 의견제시 21-0381 참조).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진안군조례"라 한다)는 단위 마을주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 및 모정 등의 건립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진안군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예산의 범위"란 한 회계연도에 책정 및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법제처 2020. 4. 21. 회신 해석 20-0058 참조)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14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한 것은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지원될 금액은 그 전년도인 2022년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물가변동 금액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2022. 12. 14.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안이유 참조)로 보이며, 그 취지에서 보면 "2023년도 예산"에는 2023년도 본예산만 해당되고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배제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오히려 해당 보조금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점,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2022년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 외에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 외에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의견23-0164, 2023. 4. 19.]

【질의요지】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일반입찰에 의해서는 상권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수립된 시책에 따라 그 필요한 상업시설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 중 하나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식품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생산제품을 규정할 수 있는지?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 중 하나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 관내 문화관광형시장에서 그 지정 기간에 생산하는 제품(식품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생산제품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입찰에 의해서는 상권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수립된 시책에 따라 그 필요한 상업시설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호)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2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4호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수의의 방법을 통한 사용허가가 확대 시행될 위험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2. 3. 2. 의견 22-0062 참조).

한편,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규정할 때에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주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법제처 2022. 8. 18. 의견 22-0207 참조),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전원재판부 2013헌바385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경우는 공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행정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나 계약의 목적 · 성질을 특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입찰에 의해서는 상권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수립된 시책에 따라 그 필요한 상업시설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경우”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경우는 행정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나 계약의 목적 · 성질을 특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반입찰에 의해서는 상권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수립된 시책에 따라 그 필요한 상업시설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경우”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입찰에 의해서는 상권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수립된 시책에 따라 그 필요한 상업시설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라의 공통사항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특정인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질의 다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으로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2. 28. 의견 16-0311 참조).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 중 하나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식품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생산제품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식품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생산제품"은 다소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바,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질의 라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으로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2. 28. 의견 16-0311 참조).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면서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 중

하나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 관내 문화관광형시장에서 그 지정 기간에 생산하는 제품(식품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생산제품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 관내 문화관광형시장에서 그 지정 기간에 생산하는 제품(식품을 포함한다)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생산제품”은 다소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바,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독일의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제222호)

□ 배경

○ 최근 우리나라는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하반기 지하철·버스 요금도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독일은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한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도이치란트 티켓 (Deutschlandticket, 줄여서 D-Ticket)인 '49유로 티켓'을 2023년 5월 1일부터 도입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 이벤트성 교통티켓인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3년간 한해 15억 유로(약 2조 2천억 원)를 예산에서 조달하기로 하였다.

○ 대중교통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독일은 49유로 월정액 티켓을 통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49유로 티켓의 입법례를 참고할 만하다.

※ 관련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50호)」, 「도시철도법(법률 제1852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46호)」

□ 도입

○ 독일은 연방정부와 16개의 각 주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의 요금을 경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중교통의 유인체계

중 교통비 지원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이며,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 독일은 1993년 근거리 대중교통에서 대중이 교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거리 대중교통의 지역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화법(RegG)」)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근 신설된 동법 제9조에서 49유로 티켓의 시행을 위한 조치를 위해 「여객운송법(PBefG)」과 「일반철도법(AEG)」의 허가를 전제로, 연방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5억 유로를 지원한다. 또한 16개의 각 주(州)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주별로 정해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 독일은 광역교통운영체계가 통합되어 있어서 교통 요금의 결정, 징수, 배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법에 따라 지방 대중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된 9유로 티켓 정책을 위해서도 별도의 재정이 지원되었으며, 이번에 도입된 49유로 티켓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교통티켓 지원 근거 법률

○ 교통티켓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연방과 주의 적절한 예산 배분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9유로 티켓과 49유로 티켓의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인 「지역화법(RegG)」과 대중교통 요금체계 관련 「여객운송법(PBefG)」과 「일반철도법(AEG)」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역화법(RegG)」

1) 목적

○ 연방은 1993년 12월 27일 「지역화법(RegG)」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23년 4월 25일 최종 개정되었다. 동법 제1조는 근거리 대중교통에서 대중이 충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공적 임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조제1항 및 제2항).

○ 또한 근거리 대중교통에서 교통서비스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거리 대중교통의 계획, 조직 및 재정지원에 대한 관할권을 통합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州)에서 규율하도록 한다(제3조).

2) ‘근거리 대중교통’에 대한 정의

○ 동법에서 사용하는 ‘근거리 대중교통’이란 주로 시내, 교외 또는 지역 교통의 교통 수요를 충족 시키려는 목적으로 정기 운행하는 교통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객 수송을 말한다. 즉 교통 수단의 총 이동거리가 50km를 초과하지 않거나, 총 이동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택시도 공간적 또는 시간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교통 수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근거리 대중교통에 포함된다(제2조).

3)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 연방정부는 주(州)의 대중교통을 위해 재정지원 분담금을 지급하며, 주정부는 매년 근거리 대중 교통을 위해 연방 세수에서 자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예산 자율성의 범위에서 주(州) 에서는 매년 근거리 대중교통의 재정지원을 위해 적절한 자체 분담금을 부담한다(제5조제1항).

4) 9유로 티켓 관련 개정

○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월 9유로의 요금으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제공되며, 「여객운송법」과 「일반철도법」 에 따른 허가는 부여된 것으로 본다(제8조제1항).

5) 49유로 티켓 관련 개정

○ 동법 제9조는 2023년 4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으며, 2023년 5월 1일부터 각 주(州) 에서는 전국 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49유로 티켓을 제공한다. 이는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며, 월 단위로 취소 가능한 월정액 49유로의 구독형 요금제이다. 「유럽연합의 규칙 (EC) No. 1370/2007」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연방, 주정부 또는 담당기관에서 처리한다 (제9조제1항).

○ 49유로 티켓의 발행에 따른 연간 총비용을 30억 유로(약 4조 3천억 원)로 추정하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며,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각 주(州)별 연간 분배액은 다음 [표1]과 같다(제9조제2,3항).

표1 연방정부의 각 주별 분배액

독일 연방의 주(州)	연간 분배액(유로)	독일 연방의 주(州)	연간 분배액(유로)
바덴뷔르템베르크	176,200,000	니더작센	120,000,000
바①에른	317,500,00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80,800,000
베를린	135,700,000	라인란트-팔츠	52,100,000
브란덴부르크	32,800,000	자를란트	10,300,000
브레멘	20,300,000	작센	43,000,000
함부르크	86,300,000	작센안할트	21,700,000
헤센	110,600,000	슐레스비히-홀슈타인	52,400,000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20,400,000	튀링겐	19,900,000

○ 주정부는 재정지원금을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2023년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자금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에는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미집행되었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기금은 연방에 반환해야 한다(제9조제6항).

2. 「여객운송법(PBefG)」

○ 1990년 제정된 연방의 「여객운송법(PBefG)」은 2023년 3월 2일 최종 개정되었다. 독일에서 요금을 받거나 영업을 위해 전차, 무궤도전차,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여객운송에 대한 운영방식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제1조제1항).

○ 운송요금과 그 변경은 허가관청의 동의(Zustimmung)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를 통해서 운송요금이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제39조제1항). 허가관청은 운송약관에 따른 운송 조건을 정한 시점의 상황이 중대하게 변경되거나, 교통개선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생기는 경우에 운송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제39조제6항).

3. 「일반철도법(AEG)」

○ 1993년 제정된 연방의 「일반철도법(AEG)」은 2021년 9월 10일 최종 개정되었다. 이 법은 철도에 적용되는데(제1조제1항제1문), 여기서 철도란, 철도수송사업을 수행하거나(철도운영회사) 철도 인프라를 운영하는(철도인프라회사) 공공기관이나 민법상의 기업을 말한다(제2조제1항).

○ 철도여객의 운송 분야는 운송조건에 대한 사전승인 없이 운행될 수 없다.

연방철도의 장거리 철도여객 및 화물부문에 대한 운임결정권은 연방정부가 가지며, 그 외의 운임결정권은 주정부가 갖는다(제12조제3항).

□ 9유로 티켓

1. 도입배경

○ 독일에서는 일찍이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권 요금제나 무상교통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해 왔다[2]. 이와 같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가 상승억제를 통해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의미도 있다.

○ 독일 연방정부의 통합적인 부담완화정책(Entlastungspaket)의 하나로 도입된 9유로 교통 티켓은 3개월 만에 약 5,290만장이 판매되고, 1,600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적 으로 유행한 코로나19와 이동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월정액권이 더욱 빠르게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은 제도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2. 정책효과

○ 9유로 티켓 정책 시행의 결과로 물가상승률은 0.7% 감소하였고, 교통요금 절약에 따른 소득지원 효과도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 수요도 대폭 늘어, 시행 한달 후 독일운송회사협회(VDV)와 독일철도(DB)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3], 9유로 티켓 도입 후 공공교통 수요가 25% 증가했다. 특히 9유로 티켓 사용기간 동안 시군 단위 지역에서 2019년 기준 철도 이용률이 1.8배 증가했다.

○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이산화탄소 180만 톤이 저감되었으며, 대기오염 수준도 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입 한달 만에 조사 대상이 된 26개 도시 중 23개 도시에서 교통 혼잡이 개선되었다.

3. 정책평가

○ 독일철도노조(EVG)가 제기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나 인프라 확장이 없으면 안전문제와 노동조건 악화의 우려가 있다.

실제 9유로 티켓 정책으로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영기관은 추가적인 외주인력을 투입하였고, 차량 정비 주기도 늘어났다. 또한 독일은 원래 복잡한 철도구조[4]로 인해 연착이 흔히 발생하는데, 9유로 티켓 정책 이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49유로 티켓

1.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2022년의 한시적인 9유로 티켓의 큰 성공에 힘입은 독일은 49유로 티켓을 5월 1일부터 출시하여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독일 교통티켓 주요내용

	9유로 티켓	49유로 티켓
시행 기간	2022. 6. 1.~ 8. 31.(3개월간)	2023. 5. 1.~ 2025. 4. 30.(3년간)
월정액 요금	월 9유로(약 13,000원)로 무제한 사용	월 49유로(약 71,000원)로 무제한 사용
적용대상	• 독일 전역 대중교통 ①용가능 (다만, 고속철도인 ICE, IC/EC, 특급열차, 고속버스 (FlixBus[5])는 제외) • 2등석만 ①용가능 • 자전거는 별도 티켓 구매 • 6세 미만의 아동은 동반 가능	• 독일 전역 대중교통 ①용가능 (다만, 고속철도인 ICE, IC/EC, 특급열차, 고속버스 (FlixBus)는 제외) • 2등석만 ①용가능 • 자전거는 별도 티켓 구매 • 6세 미만의 아동은 동반 가능
구매방식	• 온라인 플랫폼, 자동판매기, 고객센터	• DB(독일철도) 홈페①지[6], DB Navigator앱,DB여행센터 및 지역교통앱 등 온라인에서디지털 티켓으로만 구매가능
기타	• 학생 티켓①나 직업별 티켓, 9시-아보스 티켓[7] 등 ①미 표가 있었던 월정액권 사용자들에게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9유로를 제외한 차액을 환불해줌.	• 매월 10일 전에는 취소가능 • 49유로 교통티켓은 출퇴근용 티켓의 의미도 지닌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고용주가 티켓 가격의 25% ①상을 부담하여 티켓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티켓 요금의 5%를 할인해주기로 합의함.

○ [표 2]와 같이 49유로 티켓은 적용대상 및 운영방식에서 9유로 티켓과 큰 차이가 없으나, 9유로 티켓과는 달리 전자티켓(e-ticket)으로만 판매된다. 또한 49유로 티켓은 3년간 시행될 예정 이지만, 현재 가격의 유지 여부와 향후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2. 기대효과 및 개선점

○ 2022년 한시적으로 실시한 9유로 티켓 정책으로 독일정부는 25억 유로의 재정을 추가 부담했지만, 물가상승 억제와 가계소득 보전, 대중교통

이용률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

- ❍ 독일 정부는 49유로 티켓을 도입하면서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교통사고의 감소와 더불어 교통혼잡 완화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 대중교통 이외에는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대중교통의 무료화 또는 최소화 정책은 이동권의 확보와 함께 사회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이 될 수 있다.
- ❍ 49유로 티켓은 9유로 티켓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지역별 교통티켓에 비슷한 요금제가 이미 존재하기도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전자티켓 방식이라 인터넷으로만 구매해야 하는 등 노인과 같은 정보소외계층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 시사점

-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인하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할인된 정액권 형태의 교통카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의 인하 또는 무료 정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재원마련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와 지하철을 운영하는 여러 공기업의 재정적자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필요하다.
- ❍ 독일은 행정단위가 아닌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대도시 광역통합교통체계에 따른 통합환승요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대중교통이용의 배제와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다. 광역통합교통체계하의 지역에서는 동일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9유로 티켓이나 49유로 티켓과 같은 요금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독일정부의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한 정치적

결정으로 보조금이 즉각적으로 지원되고, 정해진 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 나아가 독일은 시민단체인 독일환경지원(Deutsche Umwelthilfe)를 중심으로 ‘기후티켓’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즉 “자동차 없이도 환경 네트워크를 통한 모빌리티(도보, 자전거, 버스, 지하철)로 우리 도시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며, “친환경 모빌리티는 더욱 확장되고 다양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가능한 한 쉽게 자동차를 두고 나올 수 있도록 독일 전역에 유효한 기후 티켓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우리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독일의 9유로 티켓과 49유로 티켓과 같은 통합할인정책권의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Ⅴ.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Ⅴ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2023. 11. 10.] [법률 제19402호, 2023. 5. 9., 제정]

◇ **제정이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함(제10조).

라.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제11조).

마.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4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27.] [행정안전부령 제401호, 2023. 5. 4., 제정]

◇ 제정이유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및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를 설립하려는 경우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848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경우와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및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경우의 제출 서류 등을 정하고, 자율방범대원 위촉·해촉 및 탈퇴의 방법·절차 및 자율방범대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구성·운영 기준 및 조직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1)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고, 자율방범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자율방범대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2)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에 자율방범대 정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자율방범대원의 위촉·해촉·탈퇴에 관한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1조,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추천하려는 경우 추천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위촉장을 발급하도록 함.

2)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율방범대원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 탈퇴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 · 훈련의 실시(안 제17조)

시 · 도경찰청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제도, 관계 법령, 가출인 · 실종아동 등의 발견 시 보호 조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구성 · 운영 기준 및 설립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9조, 제21조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1) 자율방범중앙회는 시 · 도자율방범연합회의 회원으로, 시 · 도자율방범연합회는 시 · 군 · 구자율방범연합대의 대원으로, 시 · 군 · 구자율방범연합대는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자율방범중앙회에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을 두며, 자율방범중앙회의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자율방범중앙회 · 시 · 도자율방범연합회 또는 시 · 군 · 구자율방범연합대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해당 조직의 운영현황 및 임원 명단 등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마.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기능 규정(안 제22조)

자율방범중앙회 등은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실종자 수색 또는 재난현장의 구조 지원 등 대규모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율방범대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등을 하도록 함.

□ 환경복지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9.] [환경부령 제1033호, 2023. 4.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부과금을 이미 납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 · 재료 · 용기 · 포장재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이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지역돌봄보장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 5. 15~2023. 5. 29.)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발달,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 입소에 의존해왔음.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은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감내하기를 강요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의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발전하여 왔으나 국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돌봄 제도와 서비스가 행정편의적으로 제각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상황에 맞게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구성되어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인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민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 · 도지사는 욕구와 수요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 · 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운영, 처우보장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로 주민의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돌봄보장조사를 통해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하고, 돌봄보장신청의 책임을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여 개별 급여를 모르면 못 받아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기존 사회보장급여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관련 급여 신청, 문의, 도움 요청 등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돌봄보장계획안을 작성하여 적정한 급여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마. 기존의 돌봄관련 사회보장급여의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의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부서 관계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돌봄보장회의와 돌봄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개인별 보장계획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러한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나 응급한 상황에서는 시행 후 사후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속한 심의·의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바. 돌봄보장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함. 보장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함(안 제22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보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지원, 예방사업에 대한 의무와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23조, 24조).

아. 탈시설과 탈원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퇴소 또는 퇴원을 하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와 협력하여 퇴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돌봄보장 대상자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료 공유, 예방사업 등에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 제28조).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5만명을 단위로 건강돌봄주치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돌봄보장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돌봄보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기존에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재정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돌봄관련 재정을 시·군·구 단위로 통합하여 돌봄보장기금을 설치하면서 지역의 욕구와 제공기반 뿐 아니라 지역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지역적 성과를 반영하여 배분기준을 상호 협의하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30조, 제31조).

카.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시행일은 공포 후 3년 후로 하되, 준비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3조).

□ 농산업경제위원회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 · 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 ·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제10조)

1)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맹견수입신고제도 도입(제17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제18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마.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제26조)

1) 맹견사육허가 전 기질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자격시험,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함.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제37조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 신고가 수리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고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소유자등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동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제59조)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차.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제69조부터 제85조까지)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3)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4) 휴업·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함.

5)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7)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8)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하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9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 5. 12~2023. 6. 21.)

◇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체적인 주거 판단 기준과 연면적 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농지(필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정 구체화(안 제3조의2)

- 농막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농지는 농지 면적(구간)별로 농막의 연면적을 차등화하고자 함

나.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안 제3조의2)

-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 시설물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현행 편람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주거목적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주거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막에 대한 주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였으나 전입신고 등 주거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농막을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축조 신고만 허용하도록 신고 기준 명확화

마. 농막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타법과의 관계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의 설치 여부 및 허가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일선에 혼선이 없도록 함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7호, 2023. 5.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관련 사고 현황·이력 및 보험 정보 등을 포함하는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3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에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성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비행승인 및 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드론 정보체계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 5. 9~2023. 5. 23)

◇ 제안이유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30만 가구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주택 공급 시작 이후 약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과도한 인구밀집과 주택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49.1%,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19.4%로 주택과 도시의 노후화는 전국적 현상임.

따라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노후 주택과 도시의 정비 사업이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 이는 전국의 주요 도시를 재건설하는

수준이어서 최소 몇 만 단위의 이주민이 몇십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막대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도시의 정비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인구감소라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의 개선 및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구역의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한 녹색건축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도록 하고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별해체방식과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녹색정비를 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

나. 이주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순환정비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다. 순환정비의 실행을 위해서는 인근 도시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권역내 녹색순환정비의 지정, 이주수요 파악 및 주거안정대책 마련 등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녹색순환정비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총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기본전략 및 목표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서 녹색순환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녹색순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녹색순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건축규제 완화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해 출자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이주민을 위한 주거안정 자금 지원 및 무주택 임차인 우선분양을 통해 주민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교육위원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3. 4. 25.] [교육부령 제302호, 2023. 4.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신설 · 이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모든 신규투자사업 및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중 학교 신설 · 이전 사업 등 일정한 사업은 교육부의 중앙의뢰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중에서는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중에서는 학교 신설 · 이전 사업 등을 각각 중앙의뢰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규칙에 따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투자사업의 대상에 사업비 전액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본인 사업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 5. 15~2023. 5.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한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악의적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2023년 1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했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5%에 달하고, 교원 86%가 학생의 문제행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교실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 보호 및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재정분야】

Ⅵ. 재정 동향

Ⅵ 재정동향

1. 팹리스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적 대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소기업포커스/2023. 4.)–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자국화' 길을 선택함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 간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

○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반도체산업 육성법(CHIPS Act, '22.8)'을 제정하였고 최근 유럽연합(EU)도 '반도체법(Chips Act, '23.4)' 시행 합의

○ 글로벌 주요국의 자체 공급망 확보와 관련된 움직임은 국내 반도체 산업·기업에게 기회와 동시에 위기이며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

□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산업, 하지만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매우 열악한 상황

○ EU 반도체 시장은 팹리스,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유한 곳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팹리스 및 관련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예상

○ 시스템반도체는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그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는 중

○ 또한 국내 반도체가 세계 시장의 22%('21)를 차지하는 반면,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1%('21)로 매우 낮은 상황

□ 국내 팹리스 기업은 '초기성장기' 단계가 가장 많으며, 연구개발 인력확보의 한계, 거래처 확보 및 확대 필요, 인프라 지원 등의 현안에 직면경상수지 단기 변동요인

○ 기업성장단계를 자체 평가하였을 때 초기성장기(42.9%)가 가장 많았으며 고도성장기(24.7%), 성숙기(13%) 순으로 긍정적인 미래 전망 가능

○ 바로 현장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의 인력 확보 및 유지, 국내외 거래처 확보 및 확대, 시제품·시양산 확대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이 시급

□ **국내 팹리스 기업의 정부 정책 및 수혜 경험 중 가장 도움이 된 분야로 ① 연구개발 자금 지원 확대, ②기술 기반의 융자지원(기보, 신보)확대, ③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직접제공, ④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순서로 평가**

□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내 반도체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팹리스 기업 육성의 한계 존재**

〈국내 팹리스 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국내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등 글로벌 반도체 수요기업들의 존재 •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 및 공정 노하우 보유 • 국내 글로벌 파운드리 확보 및 민간의 대규모 투자 계획	• 일반 벤처 창업 대비 막대한 초기 자금 필요로 진입장벽의 어려움 * 개발→상용화까지 3~5년 소요, 수십억 자본 필요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내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지만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부족 • 반도체 설계 핵심인력 부족 및 확보의 어려움 • 글로벌 반도체 수요기업 확보 경쟁의 어려움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고급인력 축적은 관련 산업생태계 확장의 기반 확보 • '90년대부터 국내 팹리스 기업 창업 본격화 및 '05년대 이후 창업 기업 확산 중 •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분야 관심 증대 및 관련 종합적 지원 정책 추진 중 * 지난 3년간 정부 R&D 투자 연평균 43.4% 증가 •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지원 중	• 반도체 新시장에 대한 전략적·능동적 대응 부족의 한계 • 국내 파운드리와의 유기적 협력 미흡으로 해외 기업과의 협력 의뢰에 따른 비용·시간 증가 • 반도체 설계전문인력 부족과 함께 전공 인력의 대기업 선호로 구인난 심각 • 개발부터 양산까지 대규모 자금지원의 한계

□ **국내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고 경쟁력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로 확산되기 위해, 자체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팹리스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인재 양성 및 중장기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전략적 two-track 접근

- 최근 반도체 관련 정부, 지자체의 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운영(예정) 중으로 단기간의 실무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세계 기술을 선도할 전문 고급인력의 양성 필요

❍ 팹리스 기술개발 자금, 기술 기반 융자자원 등 초기 개발자원 및 사업화 자금의 적극적 지원

- 초기성장기의 팹리스에 대한 투자 지원, 팹리스 수요 연계형 R&D, 자유공모 중심의 R&D 확대 필요

❍ 기업과의 공동기획을 통한 수요 확보 및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확대

- ‘정부-파운드리-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생태계 구축 및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기회를 통한 수요처 확대 필요

❍ 팹리스 기업들 간에도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해 규모의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원

- 팹리스 기업 간의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생태계를 지원하고 기술 확보, 시장 확대 등의 공동 대응 지원

2. 부동산 경기 반등, 실수요 요건 충족이 중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2023. 4.)-

□ 개요

○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의 금리 수준 전망이 낮아지고 주택가격 전망은 상승하면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

○ 작년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증감률(KB국민은행, 전월대비)은 올해 초 이후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또한, 가계의 1년 후 금리전망을 나타내는 금리 수준 전망 CSI도 작년 11월을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주택가격전망 CSI 역시 작년 11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로 전환

○ 이에 부동산 경기 동향과 상·하방 요인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제시

□ 최근 부동산 경기 동향

○ 주택매매 가격과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주택매매가격(전국, KB국민은행)은 202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연간으로 1.8% 하락하였으며, 올해에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주택매매 거래량(전국, 한국부동산원)은 50.9만 건으로 2021년 101.5만 건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으며,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3만 건을 하회

○ 미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급증하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평균 분양가는 상승하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자 초기분양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2023년 2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7만 5,438호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 비중은 66.8%로 나타남

○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수요가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전세 시장은 위축되고

월세 시장은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전세매매가격(전국, KB국민은행)은 2022년 2.5% 하락세로 반전된 이후 올해 초에도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반면, 월세의 가격 상승률(수도권,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연간으로 2.3% 상승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 거래량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4월 이후 50%를 상회하고 있다.

□ 부동산 경기 상하방 요인 점검

○ 상방요인

- **(주택가격 고평가 완화)** 주택가격의 고평가가 빠르게 조정되어 잠재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고평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IMF(2018)의 방법을 적용한 주택가격 고평가 정도 지수 (Z-score index)를 산출하였다. Z-score index산출을 위해 주택가격소득비율(Price Income Ratio, PIR), 주택가격임대료비율(Price-Rent Ratio, PRR), 주택관련 대출금리를 활용하였으며 PIR과 PRR이 높고 금리가 낮으면 주택가격이 고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각 지표를 표준화(기간중 평균=0, 표준편차=1)한 후 세 지표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국내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 고평가 지수(Z-score Index)를 산출한 결과, Z-score index는 2022년 4분기 0.3p를 기록(0보다 크면 고평가)하면서 고평가 국면에 있으나, 코로나19 이전(2019년 2분기, 0.5p)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평가 수준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 Z-Score index의 장기 추이를 살펴봐도, 현재 주택가격의 고점 인식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조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부동산 경기의 하방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유예를 시작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였으며, 2023년 1월 3일에는 전국(강남 3구, 용산구 제외)의 규제지역을 해지하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는 과거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반등하고 있는 부동산 심리)** 부동산 심리는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으나, 최근 최저점을 지나 반등하고 있다. 작년 11월과 12월 주택 및 전세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는 통계공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올해 초부터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향후 부동산 심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 등을 고려했을 때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 >

일자	정책 내용
'22년 5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22년 6월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 기간 완화 및 전입의무 폐지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250만 호 주택공급 발표
'22년 7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22년 9월	- 5개 광역시 및 규제지역 해제
'22년 10월	- 중도금 대출 보증 12억 원까지 확대, 무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22년 12월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대출 규제 완화
'23년 1월	-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전매 제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전국 주택시장 가격전망 및 소비심리지수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 하방요인

- **(금리 인상의 누적효과)** 고금리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신용은 105.4%로 과거 20년 평균(78.3%)을 크게 상회면서, 가계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금리 민감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주택·전세의 수요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실물경기 침체가 주택경기 부진으로 전이)** 실물경기의 침체로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실물경기와 주택가격은 탈동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동조화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되면서 실물경기 둔화에도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다. 반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기마저 침체되면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중된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 국면에 진입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내수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실질 주택매매가격(주택매매가격증감률과 소비자물가증감률 차이)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전세시장 위축)** 전세가격 급락 역시 부동산 투자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세가격 하락은 주택 투자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주택매도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갭투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격이 주택매매 가격에 비해 크게 하락하면 주택 구입을 위한 추가 자금 때문에 주택 투자 및 매매 수요를 감소시킨다. 최근 전세시장은 금리 인상 여파와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크게 위축되면서 전세가격이 급락해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하락하면서 주택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부동산 경기 판단 및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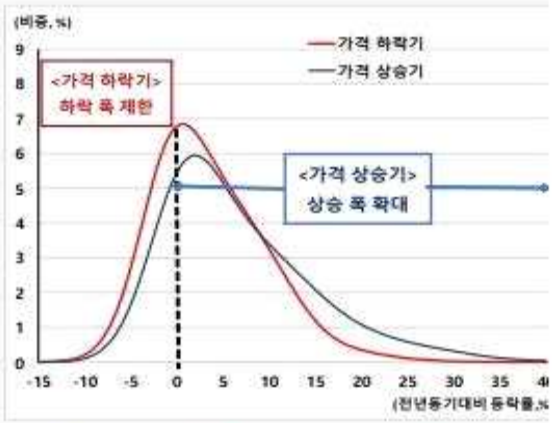
○ **(현 부동산 경기 판단)** 현재 부동산 경기의 하방 압력이 높으나, 완화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와 주택가격의 하방경직성으로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경기의 향방을 점검하기 위해 거시경제, 주택공급 및 수요, 금융 등의 변수를 이용해 부동산시장압력지수(Real Estate Market Pressure Index)를 산출하였다. 부동산시장압력지수가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의 확장, 하락하면 시장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산출결과, 부동산시장압력지수는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 2월에는 32.2p를 기록해 기준선(50p)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질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 추이 >



자료 : KB국민은행,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주 : 실질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차이.

< 주택가격 상승/하락기 가격변동률 분포 >



자료 : KB국민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상승기는 2006, 2011, 2020, 2021년
하락기는 2012, 2019,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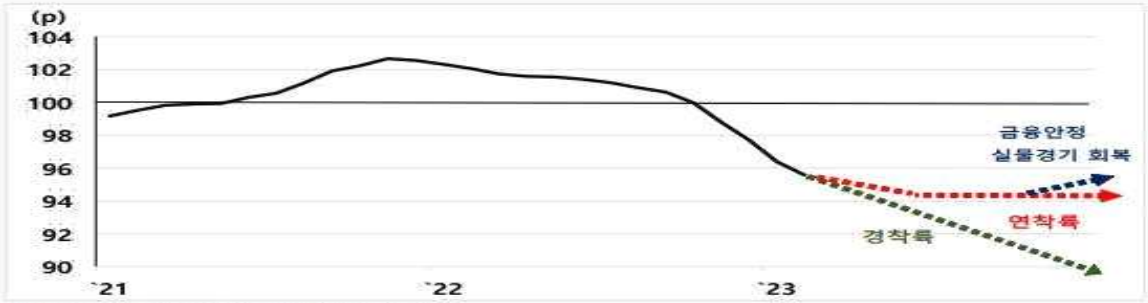
한편, 실질금리(주택담보대출금리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차이)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시장 금리가 고점 형성 이후 하락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의 하방 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격 하락기에는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보유자가 거래를 통한 손해를 기피해 매도를 유보하는 반면, 실수요자들의 매수 수요가 발생하면서 가격의 급락이 제한된다. 이러한 국내 주택가격의 하방 경직적인 특성으로 주택가격은 단기간 일정 수준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보합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 **(부동산 경기 전망)** 부동산 경기는 향후 'L' 자형의 연착륙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실수요 충족 시 연말 반등 가능성도 상존한다. 부동산 PF부실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은행 위기가 심화될 경우 국내 일부 취약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물경기는 상반기에 내외수 부진으로 하방 압력이 높으나, 하반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고금리 사이클 완화 등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물 경기 회복 강도에 따라 연내 부동산 경기 반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는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한 이후 보합권을 유지하는 'L' 자형의 부동산 경기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안정과 실물경기 회복 수준에 따라 연말 경기 반등 가능성 병존한다. 다만, 실물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금융불안정 심화 시 경착륙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나리오별 부동산 경기 향방 >



자료 : KB국민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HP필터를 통해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를 추세를 제거한 이후 100p로 표준화.

□ 시사점

○ 국내 부동산 경기는 현재로서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으나, 상존해 있는 리스크 요인이 심화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금융안정 및 실물경기 부양과 더불어 부동산PF 부실 관리 및 전세시장 안정 등의 정책대응을 통해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 경기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으나, 하방 리스크 심화 시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책대응을 통해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하다.

둘째, 부동산 경기는 실물경기의 회복 수준에 따라 연말 반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가 부동산 경기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부동산 PF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정책수단을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세시장 위축에 따르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3. 전기요금 상승압력과 중소기업의 영향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경제브리프, 2023.5)-

□ ['22년 전기요금]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요금이 상승

○ 국내 발전량의 63.5%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가격 급등

- '22년 가스와 석탄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79%, 167% 상승

<동북아 천연가스 가격(JMK) 및 호주 석탄 가격 지표>



자료 : St. Louis FED, e-나라지표

□ [국제비교] 국내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22년 전기요금 상승폭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요금수준) '21년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83% 수준이며(37개국 중 29위), 가정용 전기요금은 60% 수준(37개국 중 34위)

○ (상승폭) '22년 12월 기준 국내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4.5% 상승

- 동 기간 유럽 주요국*의 평균 전기요금은 78.1%, 일본**은 44% 상승

*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 도쿄전력 기준

○ ('23년 전망)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대비 낮은 요금과 정부의 요금 인상 유보 등으로 전기요금 상승압력 지속

- 최근 국제 현물 연료가격은 하락 추세이지만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시차*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연료가격 영향은 지속

* 석탄, 가스 등 현물 연료가격이 구입 전력비로 반영되기까지는 2개월에서 6개월 소요



자료 : St. Louis FED,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TEPCO, 한국전력통계, OECD-IEA

□ [중소기업 영향]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

○ (산업용 요금)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인상이 진행되면서 중소기업 원가 부담 가중

- '22년 10월부터 전력사용량에 따라 추가 상승분을 적용하여 최대 28.5원/kWh 인상(가정용 요금 인상분 대비 47.6%↑)
-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경영악화 심화 전망

* 업종별 제조원가 내 전력비 비중 : 열처리(4.8%) > 주조(4.1%) > 적층제조(3.6%) > 평균(1.9%)

○ (중소기업 경영부담) 전기요금 인상을 경영부담으로 인식, 전기사용 절감에도 한계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23.2월), 95%는 '전기요금이 부담된다' 고 응답, 52%는 '현재 에너지 사용량은 필요한 수준으로 절감 불가능' 하다고 응답

□ [시사점] 단기대응 기업고객 모니터링, 중장기대응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촉진

○ (단기)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침체와 함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위축 우려, IBK 기업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중장기) IBK 기업고객의 탄소배출 저감 및 녹색전환 촉진의 전략적 프레임에서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향상*을 지속 지원

* 고효율기기 교체, 에너지 진단 지원 등

〈OECD 회원국 전기요금 비교〉

■ '21년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95.6/MWh로 OECD 평균인 $115.5/MWh 대비 83% 수준이며, 가정용 요금은 $108.4/MWh로 60% 수준

OECD 37개 국가의 전기요금 수준(2021년 기준)

가정용			산업용		
국가 (OECD 내 순위)	가격 ($/MWh)	수준 (OECD 평균=100)	국가 (OECD 내 순위)	가격 ($/MWh)	수준 (OECD 평균=100)
독일 (1)	380	211	영국 (1)	187.5	163
스페인 (4)	312	173	독일 (2)	185.9	161
이탈리아 (6)	287.4	159	이탈리아 (4)	171.1	149
영국 (7)	278.9	155	일본 (10)	146.8	127
일본 (10)	240.2	133	스페인 (11)	145.8	126
프랑스 (12)	228.7	127	프랑스 (17)	136	118
미국 (31)	137.2	76	대한민국 (29)	95.6	83
캐나다 (32)	108.4	69	캐나다 (31)	92.6	80
대한민국 (34)	108.4	60	미국 (34)	72.6	63
OECD 평균	180.3	100	OECD 평균	115.5	100

자료 : OECD-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Database, 한국전력 홈페이지

〈업종별 제조원가 대비 전력비 비중〉

'21년도 뿌리기업 업종별 제조원가 대비 전력비 비중(%)

열처리	주조	적층제조	표면처리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사출·프레스
4.8	4.1	3.6	2.5	2.5	2.0
금형	소성가공	정밀가공	용접	기타	평균
1.7	1.6	1.6	1.3	0.5	1.9

자료 : 2022 뿌리산업 실태조사(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4. 디지털 권리 역량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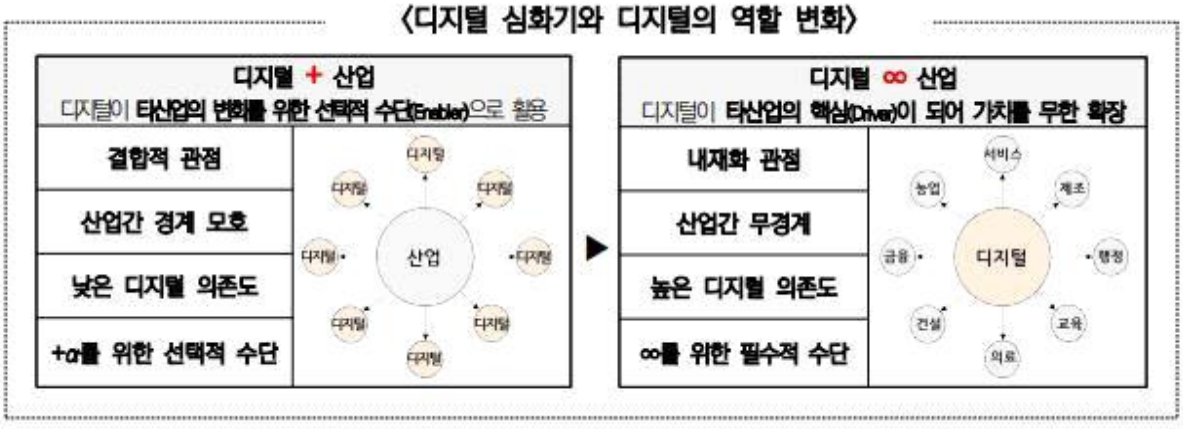
- 디지털 자유·인권·연대를 위한 10대 핵심역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5.)-

□ 디지털 전환기에서 디지털 심화기(Digital Sophistication)로의 진화

○ 디지털이 타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선택적 수단을 넘어, 이제는 모든 산업에 필수요소로 가치의 무한 확장과 변혁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 수행

〈디지털 심화기와 디지털의 역할 변화〉



□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제 설정 필요

○ 디지털 심화기에는 디지털의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일상 등 대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포용이 내재화된 기술개발과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 증진 정책 필요

※ (기존) 불편 발생시 기술적 보완, 교육 등 사후 조치 → (앞으로) 접근성 등 포용적 설계 사전 조치

※ (기존) 디지털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에 적응력 향상 → (앞으로) 모두의 디지털 권리 보장

□ 디지털 권리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인권의 확장

○ 디지털 권리는 연결성, 파급성, 혼합성 등 디지털의 특성으로 영역과 범위가 확장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보편적 인간 권리에 기반함

※ APC 인터넷 권리 헌장('01), WSIS 원칙선언('03), IRPC 인터넷 인권・원칙 헌장('11), G7 인터넷 안전 원칙('21), 유럽 디지털 권리와 원칙

('22) 등 국제사회의 디지털 권리 관련 논의 활발

○ 디지털 권리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디지털 사회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

- 개인의 역량에 따라 디지털 권리 행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

□ 디지털 권리 역량의 개념과 가치

○ 디지털 권리 역량이란, 디지털 심화라는 변화의 수용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의미

- 즉, ①디지털 사회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이해하고, ②디지털 위해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며, ③연대를 바탕으로 타인과 협력하기 위한 역량을 의미

□ 디지털 권리 역량 재구조화(re-positioning) 분석 결과

디지털 역량	디지털 권리 기본 가치		디지털 권리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티즌십 사이버 웰니스 디지털윤리 · · ·	자유	디지털사회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하고 이해하기 위한 역량	(1) 디지털의 생산적 활용
			(2) 정보의 비판적 평가
			(3) 공정한 콘텐츠 이용
	인권	디지털 위해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역량	(4) 디지털 역기능 대응
			(5) 정보 및 데이터 보호
			(6) 균형적 디지털 활용
			(7) 디지털 자기관리
	연대	디지털사회에서 연대를 바탕으로 타인과 협력하기 위한 역량	(8) 디지털 감성공감
			(9) 디지털 갈등해결
			(10) 디지털 사회참여

□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 디지털 심화기에 디지털 권리 증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디지털 권리 기준과 필요역량 제시 필요

※ 디지털 권리에 대한 선언적이고 일회성 기준이 아닌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실제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디지털 권리 역량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디지털 권리 역량 교육 추진 근거 마련 및 청소년의 디지털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 교육의 체계화 필요

※ 우리나라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SNS 상의 정보이해, 정보의 신뢰성 판단, 적절성 비교분석 등)은 OECD 37개국 중 37위, 교육경험은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상위권 주요국(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관련 법안 및 지침에 따라 체계적 교육 운영(OECD, 2021)

○ 유관 부처 및 기관,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과 상시적인 협력 기구를 마련하여 디지털 권리 개선, 권리 증진 교육 등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영국은 '10년부터 정부・민간・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터넷안전위원회(UKCIS)를 구성하여 디지털 위해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지침 마련 등의 협력 체계 구축

5.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국회미래연구원(2023. 5.)-

2023년 한국의 행복 수준

□ 2023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에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가 발간됨

○ 세계행복보고서는 유엔산하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서 매년 140여 국가를 대상으로 1개국 당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함

○ 어떤 조건 때문에 특정 국가나 사회가 행복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행복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유일한 연구 결과임

□ 한국은 행복 수준에 있어서 5.951점(0~10점 범위)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함

○ 세계행복보고서의 행복 수준은 응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캔트릴 사다리 방식의 답한 값을 최근 3년(20~22년) 평균치로 계산하여 국제 순위를 표시함

○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의 평균 행복 수준은 5.951점으로, 지난해보다 2순위 높아졌고 점수도 상승하였음

○ 2021년에는 5.845점(62위)→2022년 5.935점(59위)→2023년 5.951점(57위)으로 상승추세를 보임

□ 한국의 행복 지수를 6가지의 지표로 설명해보면, 1인당 GDP 및 건강기대 여명은 비교적 우수하나 '삶을 선택할 자유'의 측면은 여전히 취약함

○ 1인당 GDP의 행복 수준 기여분은 지난해 1.851점에서 1.853점으로 다소 높아짐

○ 건강기대수명의 기여분은 지난해 0.841점에서 0.603점으로 현저히 낮아짐

○ '삶을 선택할 자유'의 기여분은 지난해 0.414점에서 올해 0.446점으로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비교적으로 취약함

[그림2] 2023년 한국의 행복지수 및 구성비 비교 (자료: 2023 UN세계행복보고서 재구성)



□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로는 북유럽 국가들이 큰 변동 없이 상위권을 차지함

○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핀란드(7.804점), 2위는 덴마크(7.586점)와 3위 아이슬란드(7.530점), 6위 스웨덴(7.395점), 7위 노르웨이(7.315점) 등이 차지함

○ 20위권 내 국가들은 사실 큰 변동이 없었으나 이스라엘은 지난해보다 5순위 상승해 4위를 차지하였고, 리투아니아는 2017년 52위 이후 지난 6년간 순위가 상승해 올해는 20위권에 포함되었음

○ 지역별 1위를 살펴보면, 남미에서는 코스타리카(6.609점, 23위),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폴(6.587점, 25위), 중동권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6.571점, 26위)가 차지함

○ 우리나라 인근 국가들 중에는 대만(6.535점, 27위), 일본(6.129점, 47위), 중국(5.818점, 64위)이 차지함

□ 세계적인 행복 불평등 현황을 제시함

○ 이번 세계행복보고서는 작년의 삶의 평가와 감정의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본 것에 이어서 올해는 국가별 행복의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봄

○ 각 국가 내에서 가장 행복한 순서대로 순위를 나열하여 중앙값 응답보다 높은 사람들의 평균 삶의 평가에서 중앙값 미만의 평균 수명 평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됨

○ [그림 4]에서 순위가 높을수록 행복 격차로 측정한 행복 불평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행복 격차가 3.274로 45위를 차지함

[그림3] 2023년 조사에서 행복도 상위를 차지한 국가들 (자료: 2023 UN세계행복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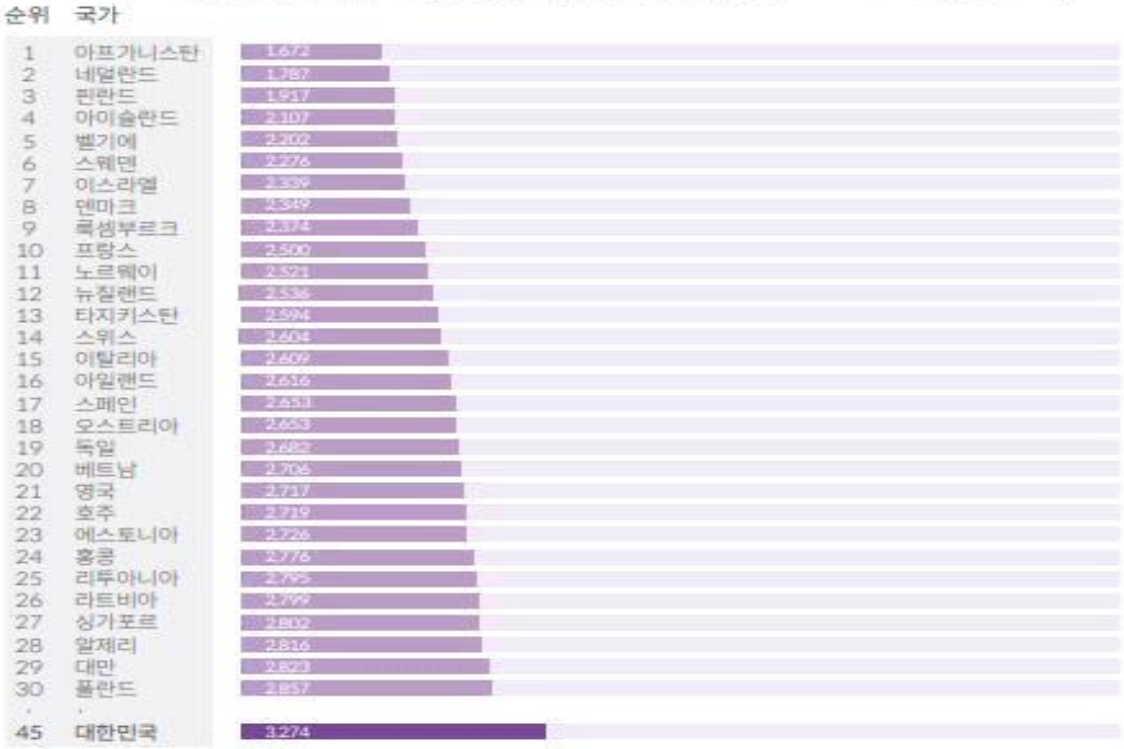


○ 전 세계 행복불평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간에 행복격차 값은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평등한 국가와 가장 평등하지 않은 국가 사이 간 격차는 5점 이내 범위에 속함

○ 행복 수준을 보여주는 [그림 3]과 [그림 4]의 순위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다른 양상을 보이는 국가들도 존재함

○ 국가 내 행복 수준이 전반적으로 평등할수록 국민들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

[그림4] 2023년 행복 불평등 국가 30위권 순위 및 우리나라의 행복 격차 (자료: 2023 UN세계행복보고서)



친사회적(pro-social) 국가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 어떤 국가나 사회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발간 10주년이 된 2023년 UN세계행복보고서가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답을 제시함

○ 먼저 어떤 개인이 더 행복한지에 대한 결론은 10년간 매우 일관되고 명확함

> 상호신뢰할 수 있고, 관대하며, 서로 돕고 사는가?
>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가?
> 소득과 건강은 좋은 상태인가?

○ 이런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할수록 더 행복한 개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개인들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내적 미덕과 외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유데모니아(eudaimonia)라고 명명한 선한 영혼의 상태, 쉽게 말해 행복에 다다른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이런 친사회적(pro-social) 특성을 가진 국민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높은 수준의 유데모니아의 특성을 갖춘 국가, 즉, 국민들이 그러한 특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제도나 사회의 철학이 친사회성을 추구하지 않는데 개인이 친사회성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 손해의 위험이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가 필요함

○ 행복을 언어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실질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우리나라는 외적인 조건인 소득과 건강에 있어서 타 국가보다 단시간에 큰 성취를 이룬 나라이나 행복의 다른 조건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 아님

○ 따라서, 경제적 안정과 높은 건강 수준이 바탕이 된 가운데 국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관대하게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인권, 평등과 정의 하에서 사회나 기관, 단체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는 철학과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외국인 유학생 도내 첫 한국형 취업 준비 교육 실시

-강원도(2023. 4. 24.)-

- 지역 고용시장 구인난 완화 및 우수 인재 유치 차원 새로운 시도 강원도일자리재단 - 한림대학교 업무협약 통해 시범 운영 -

○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형 취업 전문 교육이 도내 처음으로 시도된다.

○ 강원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의 구인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고용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취업 준비 교육 및 일자리 현장 참여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4일 춘천 한림대학교(글로벌교류센터·대학일리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4월 24일 오후 4시 일송도서관내 C.SQUARE 강의실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3개월간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에는 20여명의 유학생이 참여해 한국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 컨설팅, 면접 준비 체험, 현직자 직무특강 등을 수강할 예정이다.

○ 특히, 오는 6월 14일 속초에서 개최될 '설악권 관광일자리 박람회'에도 참가해 기업들의 채용시험에 직접 응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될 계획이다.

○ 유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전 사전 간담회에서 국내 및 한국기업 취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 이번 교육 과정 운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대학·대학원 졸업과 함께 취업에 성공하면 비자 변경을 통해 국내 근로가 가능해 도내 구인·구직 고용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 강원도일자리재단은 이번 한림대 외국인 유학생 취업준비 교육을 실시한 뒤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참여 대학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17년 2,662명, 2018년 3,591명, 2019년 3,85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이후 감소했으며, 2022년 4월 현재 13개 대학에 2,672명이 재학중이다.
(교육부 기본통계)

○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는 “강원도의 경우 구직자 수와 기업의 채용 희망 인원간 차이가 크다” 면서 “구인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 인재인 외국인 유학생의 도내 고용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2. 전국 최초 소상공인 상생 금융 모델 구축

-전라남도(2023. 4. 28.)-

- 8개 금융기관·전남신보와 중·저신용 소상공인 우대 이자 지원 협약 -

○ 전라남도는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광주·KB국민·IBK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8개 금융회사와 소상공인 특별이자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 전남도와 금융권이 협업해 고금리로 자금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화를 꾀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선도적 소상공인 상생금융 모델이다.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을 고신용 소상공인에 비해 우대한다.

○ 협약에 따라 8개 금융회사와 전남신보는 ▲전남 소상공인 육성자금 1천억 원에 대한 금리 추가 인하 ▲저금리 안심전환 대출 500억 원 신규 조성 등 총 1천5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특별 우대 융자 상품을 운영한다.

○ 8개 금융회사는 1천억 원의 금리 추가 인하 융자상품은 해당 융자에 대해 가산금리를 신용 구간별로 차등화해 고신용자 2.0%, 중·저신용자 1.7% 수준으로 제한한다.

○ 이에 대해 전남신보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 비율을 2년간 최대 100%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최초 1년간 0.6~0.8%p 인하하는 등 심사 조건을 우대해 보증을 지원한다.

○ 융자는 업체당 2억 원 한도로 하고, 전남도가 2년간 연 3.0~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이 1~2%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저금리 안심전환 대출 500억 원을 신규 조성해 2023년 만기 도래하는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용자를 대상으로 3.0% 이자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췄다.

❍ 그동안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고신용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고신용자보다 이자 감면율이 훨씬 높은 5~6%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아 낮은 이자로 소상공인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예를 들어 5천만 원 대출 시 업체당 연간 250만~300만 원 수준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남도 지사는 “지난 2월 전남도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이란 전국 최초 선도적 금융협력모델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현했다”며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상생금융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3. 자살 사후 대응 전문가 양성한다.

-충청남도(2023. 5. 11.)-

- 도, 11∽12일 실무자 대상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등 교육 추진 -

○ 충남도는 11~12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도내 15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살 사후 대응 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한다.

○ 이번 교육은 약 60명의 사후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것으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해 조직 내 자살사고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후 대응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 11일 첫날에는 자살 초기 대응 및 계획 수립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현장 개입 집단 교육,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교육, 자살 고위험군 및 외상 대상자 사후 관리 교육 등을 중점 진행했다.

○ 오는 12일에는 모의 사례 실습 시간을 갖고 참여자 간 시연 및 토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도내 자살률은 10만 명당 32.2명으로 40~60대 비중이 높았고 전년 대비 10~20대 자살자 수가 늘어났다.

○ 청년과 중장년층의 자살은 여러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직장이나 학교 등 조직 내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남은 구성원은 심리적 혼란, 불안, 우울, 불면과 같은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한다.

○ 또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적 문제로 발전하거나 자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 자살 사후 대응 서비스는 자살이 발생한 조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직 및 구성원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로,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남겨진 구성원의 빠른 일상생활 회복과 조직의 안정화를 지원한다.

○ 도 관계자는 “조직 내 자살 발생 시 사후 대응 서비스의 개입은 또 다른 자살 위기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실무자들은 도의 자살률 감소에 보탬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라면서 “실무자의 사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남은 사람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 경기도 소방, 전국 최초 「54종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제작

-경기도(2023. 5. 14.)-

- 경기도 재난사례를 반영해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림과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 -

○ 지하철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영화관람 중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방서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사람을 구하고, 어린 학생들이 소화기로 대형화재를 막았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확한 안전 상식과 대처 능력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자산임을 깨닫게 된다.

○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대해 쉽게 배우고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재난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을 담은 교육 자료를 제작해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재난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은 도내 소방서와 민간 전문 강사, 전문가 181명이 힘을 합쳐 만든 매뉴얼로 아파트 화재, 심폐소생술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재난부터 드론 사고, 캠핑장 사고까지 재난 유형을 4대 분야 54종으로 구분해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

○ 재난 시 행동 요령뿐 아니라 사고사례, 예방수칙, 소방시설 사용법 등 핵심 재난정보를 함께 담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재난 대처요령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림과 이미지로 구성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안전교육 자료를 하나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소방재난본부는 국민 행동 요령을 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31개 시·군, 교육청, 경로당, 다문화센터 등에 배포해 소방 안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 모든 소방관서가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54종 국민 행동 요령은 재난 상황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작했다” 라며 “필요한 행동 요령을 계속해서 발굴해 외국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매뉴얼 제작에도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5. 원어민 선생님과 메타버스로 영어 공부해요!

-경북교육청(2023. 5. 10.)-

○ 경북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8일(월)부터 25일(목)까지 ‘2023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3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은 지난 2022년 시범 운영을 통해 영어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만족시키며 성공적으로 종료하면서 올해 정식으로 확대 추진하는 영어사업이다.

○ 올해는 1, 2학기에 각 3주간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 학생 연간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저녁시간(19:00~20:20)을 활용해 메타버스 수업 공간에서 2인 1조로 구성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한국인 영어교사가 실시간으로 팀티칭 통해 영어원서(동화책)를 활용한 영어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수업을 진행한다.

○ 지난 4월 참가 희망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32개 반(초 16개반, 중 16개반)을 편성했으며, 수업 교재로 사용되는 영어원서 1권씩을 해당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 특히 초등 16개 반은 수강 신청의 시작과 동시에 조기 마감되어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영어수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엿볼 수 있었다.

○ 최대 16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각 반은 영어원서를 활용한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 영어 교육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질 높은 영어 수업이 제공될 예정이다.

○ 또한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3차례의 메타버스 연수와 2차례의 수업 시연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 경북교육청은 도내 원어민 교수인력을 적극 활용한 수준 높은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원어민 수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학생들의 영어 실력 격차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상북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영어공부를 하며 AI 스마트 시대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 영어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미래형 영어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현 황

○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사업은 안전위험 주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노후한 위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을 저리융자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5억원 감액한 6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B)		B-A	(B-A)/A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사업	6,042	8,500	8,500	6,000	△2,500	△29.4

○ 동 사업은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 중 안전위험 주택(안전위험 D, E 등급 주택) 거주자,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 거주자 등이다.

○ 동 사업의 지원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보증을 활용하여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호당 최대 2억원(지방은 1억 5,000만원)을 최장 6년 동안 1.3%(변동금리)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동 사업의 2023년 계획안 60억원은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대상 70세대에 평균적으로 8,500만원씩 대출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것이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안전위험 주택 또는 노후·불량주택 거주자,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방식) 융자 (연 1.3%)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지방 1.5억원 (호당)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가능, 총 6년) ○(2023년 계획안) 기타민간융자금(450-04) : 6,000백만원 - 지원주택 70세대 × 85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 분석의견

○ 첫째,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사업을 통한 이주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이주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위험건축물 거주자가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는 동 사업에 대하여 사업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최근 사업실적과 성과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동 사업의 2021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2020년 대비 목표치를 대폭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도는 37%에 불과하였고, 같은 해에 융자수요가 부족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액 95억원 중 30억원이 감액되었다.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단위: 호, %)

성과지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측정산식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목표	150	143	100	100	위험건축물 이주비지원 실적
	실적	107	148	37	집행중	
	달성도	71.3	103.5	37.0	집행중	

자료: 국토교통부

- 동 사업에서 이주대상자에게 실제 융자한 실집행 실적을 살펴 보면, 2021년도의 경우 이주지원율은 36.4%에 불과하였고, 2022년도 8월말 기준으로 이주지원율은 57.2%이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융자실적]

(단위: 백만원, %)

2021			2022.8.		
계획 (a)	이주지원 (b)	이주지원률 (b/a)	계획 (a)	이주지원 (b)	이주지원률 (b/a)
9,500	3,642	36.4	8,500	4,864	57.2

자료: 국토교통부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위험건축물 정비 특성상 이주가 비정기적으로

발생되어 집행시기가 계획과 일치하지 않고, 매년 대출대상 여부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규모에 따라 이주지원 실적이 유동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위험건축물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고, 배수 ·배관 노후화로 인해 거주자의 건강이 우려되며, 일부 세대가 이주한 경우 빈집 관리와 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적기에 이주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주지원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정비사업 이주지역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위험건축물 거주자가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목적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노후·불량 단독주택 거주자도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동 사업은 정비구역의 노후· 불량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서 안전등급 D · E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란 제1종·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반면, 단독주택은 제3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노후· 불량한 정도가 사실상 안전등급 D · E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독주택 거주자는 동 사업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 동 사업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후· 불량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시 공동주택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동 사업을 통한 이주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노후· 불량 단독주택 거주자도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자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2.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의 사업성과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현황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은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R&D)의 내역사업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신기술 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산업계·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여 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52억 9,000만원 증액한 1,443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B)		B-A	(B-A)/A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R&D)	397,127	435,929	435,929	551,247	115,318	26.5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83,200	89,010	89,010	144,300	55,290	65.1

○ 2021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1차년도에 8개 신기술분야 컨소시엄을 8개 선정하여 컨소시엄당 연 1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3년간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거친 후 3년을 추가 지원('21~'26년)한다. 2021년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등 8개 신기술 분야이며, 주관대학과 참여대학 6개 대학을 포함한 7개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대학이 교육과정을 공유한다.

○ 2023년에는 반도체 등 인력수요·공급차가 큰 첨단산업분야 대상 컨소시엄을 신규로 5개 컨소시엄을 더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기존 8개 컨소시엄 지원 예산안 888억원, 신규 5개 컨소시엄 지원 예산안 555억원이 편성되었다.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한 8개 신기술분야별 컨소시엄]

신기술분야	컨소시엄	
	주관대학	참여대학
① 인공지능	전남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경북대, 전주대, 영진전문대
② 빅데이터	서울대	경상국립대, 서울시립대, 숙명여자대, 전북대, 한동대, 경기과학기술대
③ 차세대반도체	서울대	강원대, 대구대, 숭실대, 중앙대, 포항공과대, 조선이공대
④ 미래자동차	국민대	계명대, 선문대, 아주대, 인하대, 충북대, 대림대
⑤ 바이오헬스	단국대	상명대, 홍익대, 대전대, 우송대, 동의대, 원광보건대
⑥ 실감미디어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배재대, 전주대, 중앙대, 계원예술대
⑦ 지능형로봇	한양대(ERICA)	광운대, 부경대, 상명대, 조선대, 한국산업기술대, 영진전문대
⑧ 에너지신산업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경남정보대

자료: 교육부

□ 분석의견

○ **2021년에 시작한 8개 컨소시엄의 경우 현재 2021년 2학기, 2022년 1학기의 두 학기를 추진한 상황으로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 및 취업 등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신규사업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동 사업은 인적·물적 자원을 컨소시엄간 상호 공유하여 지역 간·대학 간 교육역량 차이를 해소하고 대학의 정원 증원 없이 누구나 첨단분야 관련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의 구성행태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40% 이상을 구성하고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 교육부는 현재 동 사업의 성과에 대해, 핵심성과지표가 신기술분야 정규 교과목 개발 건수, 신기술분야 정규 교과목 운영 건수, 신기술분야 정규 교과목 수강신청 인원이며 2021년 2학기에는 목표값 대비 달성하였으며 2022년 1학기에도 모든 지표에서 7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교류가 활발하여 바이오헬스컨소시엄 사례를 보듯 전체 수강 신청인원 5,560명 중 교육과정 교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인원은 4,927명으로 전체 인원 중

89.5%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1차년도 사업 특성상 신기술 분야에 대한 비전공자의 진입장벽 완화 및 교육기회 확대를 우해 초급·중급 강좌 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컨소시엄별로 마련한 중고급 교과목 개발 및 운영 확대 계획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그러나 교육부는 동 사업에 대해 신기술분야 정규 교과목 개발 건수, 신기술분야 정규 교과목 운영 건수, 신기술분야 정규 교과목 수강신청 인원 등 투입지표 위주로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공유대학은 전공학생 뿐만 아니라 비전공 학생들이 신산업 분야의 교과과정을 수강하고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 등 신산업 관련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으로까지 연계한다는 목적이므로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 및 취업 등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업 추진 기간이 2학기에 불과하여 초급, 중급, 고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그리고 컨소시엄별, 강좌 난이도에 따라 강좌 수강신청률이 낮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컨소시엄 중에는 차세대반도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수강신청률이 낮으며, 고급과정이 초급 및 중급과정에 비해 수강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가 사업 초기로 초급·중급 강좌 위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향후 고급 과정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21~2022년 수강신청 정원 대비 신청인원 비율]

(단위: %)

구분	초급	중급	고급
인공지능	74.0	65.8	65.2
빅데이터	105.3	87.7	104.4
차세대반도체	**70.9**	**36.2**	**32.9**
미래자동차	72.8	87.8	68.7
바이오헬스	65.0	70.5	-
실감미디어	67.2	62.5	53.0
지능형로봇	60.9	87.0	72.2
에너지신산업	**58.5**	**39.3**	**26.6**
컨소시엄 전체	79.0	75.1	58.5

주: 온라인 강좌와 같이 수강신청인원 제한이 없는 강좌를 제외한 경우로, 교육부는 해당 수강신청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수강신청비율은 더 높아진다고 설명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의 성과가 사업 3차년도가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에 도입한 컨소시엄에 대해 2024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3년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컨소시엄별, 강좌 난이도에 따라 강좌 수강신청률이 낮은 경우가 있으며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 및 취업 등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5개 컨소시엄 확대하여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신규사업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약자자립지원 로봇기술개발 사업의 점진적 추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2. 10.)-

□ 현황

○ 사회적약자자립지원 로봇기술개발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목표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보조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 제품을 개발 및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3년 예산안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3년도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B)		B-A	(B-A)/A
사회적약자자립지원 로봇기술개발	0	0	0	2,000	2,000	순증

○ 동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기준 총사업비 249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이동보조, 목욕보조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기술을 개발하고, 2019~2021년까지 추진된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사업에서 개발된 기술개발을 실증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23년 예산안은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사업의 기술개발 결과 실증을 위한 2개 과제와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 로봇기술개발을 위한 2개 과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사회적약자자립지원 로봇기술개발 사업의 2023년 예산안 편성 내역]

2023년 예산안 산출근거
· 실증 과제 2개 × 500백만원 × 9/12개월 = 750백만원 · 기술개발 신규과제 2개 × 1,250백만원 × 6/12개월 = 2,15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분석의견

○ **2021년까지 추진된 돌봄로봇 사업의 사업화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돌봄로봇 사업 결과 활용과 연계하여 계획된 2개 실증**

과제를 먼저 추진하여 실증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2021년에 돌봄 제공자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돌봄 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에서는 2019~2021년에 '대량도입이 가능한 다관절 지능형 식사보조 로봇개발 과제' 등 4개 과제에 146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23년에 신규 편성된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 사업은 동 사업의 후속 사업 성격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사업과 다르게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자 등의 자립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로봇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로봇과 사회적약자 자립지원 로봇 기술개발 비교]

구분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사회적약자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
목적	· 돌봄 제공자 부담 경감	· 돌봄 수혜자 생활 자립 지원
사업기간	· 2019~2021년	· 2023~2026년
총사업비	· 146억 1,400만원(국비)	· 249억 7,500만원(국비)
지원제품	· 식사보조, 욕창예방 로봇 등	· 이동보조, 목욕보조 로봇 등
특징	· 돌봄로봇에 대하여 산업부에서 기술개발 후 보건복지부에서 중개연구 수행 계획	· 기 개발한 돌봄로봇에 대한 실증 · 자립지원 로봇에 대하여 산업부에서 기술개발 후 보건복지부에서 중개연구 및 시범보급 수행 계획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기존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사업은 개발된 4개 로봇의 주관개발기관에서 사업화를 위한 인증 획득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 사업화 성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적약자 자립지원 로봇기술개발 사업은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사업의 기술개발 결과와 연계한 2개 실증과제와 신규 2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약자립지원 로봇기술개발 사업의 추진에 앞서 기존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사업의 기술개발 결과 활용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실증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사업의 기술개발 활용 실적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사업은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장애인구 증가에 따른 간호· 간병인력 보조를 위해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회적약자자립지원 로봇기술개발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간병 인력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사업에 착수하였다고 설명한다.
- 또한 기존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사업은 사업 종료 이후 기능구현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 등을 개최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히 돌봄로봇은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까지 개발(4년), 실증(1~2년), 의료기기 인증(1년) 등 5~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급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돌봄로봇에 대한 실증과 고령자 자립지원을 위한 신규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사회적약자자립지원 로봇기술개발 사업은 기술개발에 착수한 이후 실제 사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를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존 사업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술개발 중간단계에서과제 수행방식이나 목표 등을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동 사업은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한 의료·재활로봇의 임상 및 사업화를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2022년 8월 현재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시범보급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자립지원로봇기술개발 사업은 기존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 사업의 결과를 활용한 실증 과제를 먼저 추진한 이후, 충분한 기획 및 준비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손실 보전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2023. 3.)-

□ 감사배경 및 목적

○ 청구인(A 등 384명)은 우정사업본부가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1]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위반하고, 지방우정청별 근로시간면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부당하게 비공개 결정하였다는 사유로 2022. 6. 9.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 이에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한 후 2022. 10. 5. 청구인에게 이를 회신하였다.

□ 감사중점 사항

○ 이번 감사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

○ 이번 감사는 2022. 10. 11.부터 같은 해 10. 13.까지와 2023. 1. 25.부터 같은 해 1. 27.까지 총 6일간 감사인원 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의견 수렴과 감사원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2023. 4. 4.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감사결과

○ 감사 결과 총 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고,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합계	주의	통보
건수	1	1	·

□ **제목: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손실 보전 부적정(주의)**

○ 우정사업본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자(현업)에게 임금손실 보전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됨

-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본부 및 각 지방우정청에서 자율적으로 현업공무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손실을 보전하고, 2021. 4. 1. 보수업무를 본부로 통합한 이후 우정사업본부가 직전연도 직원의 평균 시간외근무시간(2021년: 10시간, 2022년: 7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 지급

❍ 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게 하였다.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 한도를 정하고, 이들이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